



경기도 공고 제2021 - 459호

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3일

경기도지사

1 선발예정인원

임용예정기관(부서)	근무예정지	선발예정인원	담당업무	연락처
경기도(총무과)	수원	4명	청사 방호	031-8008-2204
경기도 수자원본부(수질관리과)	팔당상수원 보호구역	1명	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감시	031-8008-6972
경기도 소방학교(교육지원과)	용인	1명	청사 방호	031-329-0211

2 시험과목 및 방법

가. 제1차 시험 : 필기시험 2과목(일반상식, 민간경비론) [4지택1형]

시험명	필기시험 과목	문항수	시험시간	비고
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	일반상식	20문제	40분(10:00~10:40)	경기도 역사·문화·시책 포함
	민간경비론	20문제		-

-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(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)

나. 제2차 시험 : 서류전형

- 거주지, 응시연령,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
-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,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



다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 [제1·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]

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
【 면접평정요소 】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라.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: 필기시험 성적순위와 관계없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*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서, 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순서

※ 불합격기준
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- 서류 미제출자, 서류 부적격자, 면접포기자, 면접불참자

3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,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(당연퇴직)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▶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▶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(당연퇴직)

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1.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

2.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

3.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. 다만,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
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※ 단,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

다. 성 별 : 제한없음

라. 거주지 제한 : 2021. 1. 1.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
마. 자격사항 : 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4조(임용의 신체조건)의 조건을 갖춘 자

1)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

2) 시력(교정시력을 포함한다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일 것

※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여야 함

4

문제출제

이번 시험의 시험문제는 경기도 자체출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 ※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



5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기간	구분	시험장소공고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2021. 3. 10.(수) <u>09:00</u> ~ 3. 12.(금) <u>18:00</u> (기간 내 24시간 접수)	필기시험	3. 26.(금)	4. 3.(토)	4. 9.(금)
	서류전형	※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		
	면접시험	4. 9.(금)	5. 10.(월)~5. 11.(화)	5. 18.(화)

- 가.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(<https://www.gg.go.kr>)에 공고합니다.
- 다.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 (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)

6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1) 접수방법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
※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(☎1522-0660)로 문의

※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,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

- 2) 접수시간 : 3. 10.(수) 09:00 ~ 3. 12.(금) 18:00 (기간 내 24시간 접수)

※ 문의사항 안내는 09:00부터 18:00까지 가능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
- 3) 기 타 : 응시수수료(5,000원)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전화 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비용 등)이 소요됩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1)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2)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(JPG, 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)이 필요합니다.

※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·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



- 3)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4)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.
- 5) 시험응시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

가. 취업지원대상자 (근무예정부서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)

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과목 득점에 과목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(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종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서 확인

나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원서접수 시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 가산비율(10% 또는 5%)과 보훈(증서)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※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필기시험 전일(4.2.) 18시까지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

○ 가산점 등록대상 및 입력사항

등록대상	등록사항
취업지원대상자	취업지원대상자 여부, 보훈(증서)번호, 가점비율

※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: 2021. 3. 10.(수) 09:00 ~ 3. 12.(금) 18:00 (기간 내 24시간)



8 보수 및 복무

- 가. 보 수 :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9조 및 별표 1참조
- 나. 복 무 :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청원경찰법」, 「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」, 「경기도 청사 출입·보안 규정」 등 적용

9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의 응시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를 준용하여,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[제출서류: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, 자원봉사 활동실적 리포트 및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등 (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첨부된 서식 활용)]
※ 자원봉사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.
- 마. 필기시험에서 과락(각 과목 만점의 40% 미만)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음과 상관없이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바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

- 사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의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3(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)을 준용하여,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자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차.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무예정 부서로, 시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(☎ 031-8008-402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